



김해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382 호 2017. 4. 28. (금)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제 1213호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9998
제 1214호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999
제 1215호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01
제 1216호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02
제 1217호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20003
제 1218호	김해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0005
제 1219호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20007

규 칙

제 594호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008
--------	----------------------------------	-------

고 시

제2017-119호	김해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반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010
제2017-120호	김해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20014
제2017-121호	김해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김해도시관리계획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20015
제2017-122호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20020

회 람										
--------	--	--	--	--	--	--	--	--	--	--

발행 : 김 해 시 편집 : 홍보 담당 관 (330-3011, 행정 3011)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7년 4월 28일

김해시 조례 제1213호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4조”를 “제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정”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3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1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2조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센터운영지침에 따라 조직명칭 변경(제5조)
 -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으로 개정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범위 확대(제9조)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7년 4월 28일

김해시 조례 제1214호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김해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해당 아동의 보호 조치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아동의 권익도모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2조,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 우선 조치에 관한 사항(제9조)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7년 4월 28일

김해시 조례 제1215호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제14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계약일로부터”를 “계약일부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같은 조 제4항 중 “해지”를 “취소”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등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에 근거 없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위탁 제한한 조문 삭제(제17조)
- 상위법과 다른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 규정, 보조금의 환수 규정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개정함(제7조, 제16조, 제25조)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허성곤

2017년 4월 28일

김해시 조례 제1216호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1항제1호 중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경상남도 옥외광고
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들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해소 및 자율적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 삭제(제9조제4항)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7년 4월 28일

김해시 조례 제1217호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금지, 시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 및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 시민건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위원회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안이유

-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김해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17년 4월 28일

김해시 조례 제1218호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도과장, 정수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 관련 학식이 있는 시민
4. 김해시의회 의원

제3조제5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반기 1회로 3월과 9월에”를 “반기 1회”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9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7조에 따른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회의참석 수

당·여비, 그 밖에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본다.

◇ 제안이유

-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령에 맞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개정 (제명, 제1조)
- 위원의 구성 “10인 이내”를 “15명 이내”로 함(제3조)
- 위원의 위촉 및 임명 대상자 정비(제3조)
- 위원회 개최 시기 “반기 1회 3월과 9월”을 “반기 1회”로 함(제5조)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수당 지급 규정 정비(제11조)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허성곤

2017년 4월 28일

김해시 조례 제1219호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를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2조, 제1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를 “유료화장실”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제4호, 제17조제2호, 제18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별표 규정”을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 규정을”을 “을”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역안”을 “구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를 “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을 “운영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적용일로부터”를 “적용일부터”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1호가목 중 “제6조”를 “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0조”를 “법 제10조제1항”로 하며, 같은 란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제11조”를 “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란 제3호가목 중 “제7조”를 “법 제7조·제7조의2”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8조”를 “법 제8조”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 근거조항란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정부의 규제개혁 정착 등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에 근거 없이 유료화장실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도록 한 규정과 유료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사항 이행하도록 한 규정 삭제(제17조)

제48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허 성 곤

2017년 4월 28일

김해시 규칙 제594호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계의 정수란 중 “252”를 “256”로 한다.

별표 1의 진영읍의 소계 정수란 중 “73”을 “77”로 하고, 진영읍 여래리의 정수란 중 “13”을 “17”로 하고, 같은 표 진영읍 여래리의 행정리명란 중 휴먼시아2란 다음에 LH국민임대1, LH국민임대2, LH국민임대3란을 신설하며, 공정2란 다음에 협성휴포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진영읍	여래리	LH국민임대1	여래리 973번지 LH국민임대아파트 601동~603동
		LH국민임대2	여래리 973번지 LH국민임대아파트 604동~606동
		LH국민임대3	여래리 973번지 LH국민임대아파트 607동~609동
		협성휴포레	진영로 284 일원 협성휴포레아파트 101동~103동

별표 2의 계의 정수란 중 “492”를 “495”로 한다.

별표 2의 동상동의 소계 정수란 중 “23”을 “25”로 하고, 같은 표 동상동의 1통, 2통, 5통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23통란 다음에 24통, 25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상동	1통	1	동상동 산3-1~4, 1~116, 404, 1103, 1105~1110
	2통	1	동상동 117~123-4, 319~325-2, 325-15~325-36, 325-42~325-49, 328~329-4, 345, 346-6, 347, 348번지 일원
	5통	1	동상동 260~265, 284~284-14, 289~294-28, 1101~1102, 1119~1120번지 일원
	24통	1	동상동 1100번지 일원
	25통	1	동상동 1115 ~ 1117번지 일원

별표 2의 장유3동의 소계 정수란 중 “44”를 “45”로 하고, 같은 표 장유3동의 12통, 13통, 42통, 43통을 다음과 같이 하며, 44통란 다음에 45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유3동	12통	1	관동동 산20-4, 20-5, 산23~산42, 208, 247~272, 267~279, 301~304, 산43~산66, 272-5, 273~274-3, 275~360, 1059~1062, 1072~1075, 1085~1088
	13통	1	관동동 산1~산9, 산15~산17, 30~166, 산10~산14, 산18~20, 167~207, 247-1, 3, 4, 6, 74, 1096~1098
	42통	1	관동동 1051~1058, 1063, 1064~1070, 1076~1078, 1079~1084

43통	1	관동동 1089~1095, 1099~1100, 1105~1108, 1101~1104, 1109~1126
45통	1	관동로27번길 95 101동 ~ 110동

별표 3의 계의 정수란 중 “3,368”을 “3,406”로 하고, 진영읍의 정수란 중 “319”를 “336”로 하며, 동상동의 정수란 중 “118”을 “127”로 하고, 장유 3동의 정수란 중 “252”를 “26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진영읍과 동상동, 장유3동의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에 따른 리통반 신설과 동상동 및 장유3동의 경계구역 조정으로 주민의 원활한 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관할구역 조정

◇ 주요내용

- 진영읍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에 따라 LH국민임대1, 2, 3, 협성휴포레란을 신설하고, 이장의 정수를 73명에서 77명으로 증원(별표 1)
- 동상동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에 따라 24통, 25통란을 신설하고, 통장의 정수를 23명에서 25명으로 증원(별표 2)
- 장유3동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에 따라 45통란을 신설하고, 통장의 정수를 44명에서 45명으로 증원(별표 2)
- 동상동과 장유3동의 일부지번을 동일생활권의 통으로 관할구역 조정(별표 2)

김해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반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해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반달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과(☎055-330-69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28일

김 해 시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반달 공원	어린이 공원	김해시 부곡동 1165번지	2,298.4	-	2,298.4	98.12.23	-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반달공원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세부시설 설치	·반달공원을 생태놀이터로 조성하여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자연을 접하고, 체험·휴식할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으로 제공 ·도시의 녹지·자연지반의 증가로 도시 자연환경의 보전, 물 순환, 미기후 조절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변경)

구분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2,298.4	-	2,298.4	
시설면적계	1,081.1	증)149.4	1,230.5	기정시설율 : 47.0% 변경시설율 : 53.6%
건축면적	바닥면적	-	-	-
	연면적	-	-	-

나.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분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298.4	-	2,298.4	
공원시설계	1,081.1	증)149.4	1,230.5	
도로 및 광장	733.7	감)357.0	376.7	
조경시설	22.3	증)24.0	46.3	
유희시설	288.6	증)492.2	780.8	
운동시설	36.5	감)19.0	17.5	
편익시설	-	증)9.2	9.2	
녹지	1,217.3	감)149.4	1,067.9	

다. 세부시설조서

1) 도로 및 광장(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비 고
					바닥 면적	연면적	규 모	
기정		소	계	733.7	-	-	-	
변경		소	계	376.7	-	-	-	
기정	1	도 로	부곡동 1165번지	92.3	-	-	-	
변경	1	도 로	부곡동 1165번지	249.9	-	-	-	
기정	2	중앙광장	부곡동 1165번지	641.4	-	-	-	
변경	2	중앙광장	부곡동 1165번지	126.8	-	-	-	

2) 조경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비 고
					바닥 면적	연면적	규 모	
기정		소	계	22.3	-	-	-	
변경		소	계	46.3	-	-	-	
기정	3	앉음벽	부곡동 1165번지	4.3	-	-	-	
변경	-	-	-	-	-	-	-	폐지
기정	4	파고라	부곡동 1165번지	18.0	-	-	-	
변경	-	-	-	-	-	-	-	폐지
신설	3	-	부곡동 1165번지	46.3	-	-	-	

3) 유희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비 고
					바닥 면적	연면적	규 모	
기정		소	계	288.6	-	-	-	
변경		소	계	780.8	-	-	-	
기정	4	조합놀이대	부곡동 1165번지	216.6	-	-	-	
변경		-	-	-	-	-	-	폐지
기정	4	그네	부곡동 1165번지	72.0	-	-	-	
변경		-	-	-	-	-	-	폐지
신설	4	유아놀이터	부곡동 1165번지	146.2	-	-	-	
신설	5	모형놀이터1	부곡동 1165번지	595.9	-	-	-	
신설	6	모형놀이터2	부곡동 1165번지	38.7	-	-	-	

4) 운동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규모	
기정	소 계			36.5	-	-	-	
변경	소 계			17.5	-	-	-	
기정	6	체력단련시설	부곡동 1165번지	36.5	-	-	-	
변경	7	체력단련시설	부곡동 1165번지	17.5	-	-	-	번호변경

5) 편의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규모	
신설	소 계			9.2	-	-	-	
신설	8	세족장	부곡동 1165번지	9.2	-	-	-	

6) 녹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규모	
기정	소 계			1,217.3	-	-	-	
변경	소 계			1,067.9	-	-	-	
기정	7	녹지	부곡동 1165번지	1,217.3	-	-	-	
변경	9	녹지	부곡동 1165번지	1,067.9	-	-	-	번호변경

7) 세부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도면표시번호)
기정	합 계				20.3	92.3				
변경	합 계				136.6	249.9				
기정	소로	3	1	6.0	7.0	43.7	진입로	부지경계	중앙광장	
변경	소로	3	1	2.0	8.8	18.2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3	
기정	소로	3	2	6.0	4.9	30.8	진입로	부지경계	중앙광장	
변경	소로	3	2	1.5	9.3	14.0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3	
기정	소로	3	3	2.0	8.4	17.8	진입로	부지경계	중앙광장	
변경	소로	3	3	1.5~3.0	102.0	195.0	산책로	중앙광장	중앙광장	
신설	소로	3	4	1.0~1.5	16.5	22.7	연결로	소로3-3	소로3-3	

4.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동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외동 126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행면적(㎡)	건축면적(㎡)	규 모	비 고
당초	67,256.0	146,400.77	지하1층, 지상 5층	김해시 고시 제2015-188호
변경	67,145.1	146,448.54	지하1층, 지상 5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이마트 대표 이갑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337(성수동 2가)
5. 사업기간 : 2012. 09. 20 ~ 2017. 12.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권리자조서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내용	
당초	외동	1264	74,311.6	67,256.0	(주)이마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377				
변경	외동	1264	67,256.0	67,145.1	(주)이마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377				

7. 실시계획 변경 사유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신고 결과를 반영한 차로 조정에 따른 정류장 부지면적 축소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에 비치】

김해시 고시 제2017-121호

**김해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김해도시관리계획(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1-1-1, 중1-5, 중1-29, 중2-6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28일

김 해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 [붙임1]

나. 김해도시관리계획(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김해도시관리계획(내외지구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2]
- 김해도시관리계획(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붙임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외동 126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1, 종로1-5, 종로1-29, 종로2-68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주변 도로 정비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노 선 명	도시계획결정		금회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면적(m ²)		
					당초	변경	
대로1-1-1	22,580	35~49	566.7	35~49	3,026.8	3,116.2	
종로1-5	846	20~30	504.4	20~30	2,211.7	2,211.7	
종로1-29	119	23.1~23.5	119	23.1~23.5	271.1	281.2	
종로2-68	259	15~18.1	259	15~18.1	1,666.4	1,677.8	
합 계	23,804	15~49	1,449.1	15~49	7,176.0	7,286.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이마트 대표이사 이갑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377(성수동 2가 333-16번지)

5. 사업기간 : 2014. 05. 30 ~ 2017. 12.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변경없음

7. 실시계획 인가 신청사유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신고 결과를 반영한 차로 조정을 위함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에 비치】

【붙임2】 김해도시관리계획(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김해 내외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김해시 내동·외동 일원	1,949,391.3	-	1,949,391.3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2.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변경

■ 도로총괄표

(단위 : 개소, m, m²)

구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합계	기정	159	29,860	439,263.3	21	10,781	227,627.3	62	12,172	161,869	76	6,907	49,767
	변경	159	29,860	439,374.2	21	10,781	227,726.8	62	12,172	161,880.4	76	6,907	49,767
대로	기정	6	4,456	142,172	1	1,975	70,277	3	1,974	59,220	2	507	12,675
	변경	6	4,456	142,261.4	1	1,975	70,366.4	3	1,974	59,220	2	507	12,675
중로	기정	25	9,667	181,119.3	14	6,714	136,430.3	11	2,953	44,689	-	-	-
	변경	25	9,667	181,140.8	14	6,714	136,440.4	11	2,953	44,700.4	-	-	-
소로	기정	128	15,737	115,972	6	2,092	20,920	48	7,245	57,960	74	6,400	37,092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1	35~49	주간선 도로	22,580	광로2-1-3	좌곤리 시계	일반 도로		91.12.31	도로단면 조정에 따른 도로폭 증가 (+0.2m)
변경	"	1	1-1	35~49	"	22,580	"	"	"			
기정	중로	1	29	20~23.5	보조 간선 도로	119	대로1-1-1	중로1-5	일반 도로		95.11.22	도로단면 조정에 따른 도로폭 증가 (+0.1m)
변경	"	1	29	23.1~23.5	"	119	"	"	"			
기정	중로	2	68	15~18	국지 도로	259	대로1-1-1	중로1-5	일반 도로		12.3.15	도로단면 조정에 따른 도로폭 증가 (+0.1m)
변경	"	2	68	15~18.1	"	259	"	"	"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대로1류 1-1호선	대로1류 1-1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 폭원확장 - 확장구간 : 444m - 확장폭원 : 0.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 교통영향평가 변경내용을 수용하는 사항으로서, 터미널 주변 도로단면 조정에 따라 도로 폭원을 확장(+0.1~0.2m)하고자 함
중로1류 29호선	중로1류 29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 폭원확장 - 확장구간 : 94m - 확장폭원 : 0.1m(23→23.1m) - 기정 폭원 오기 정정 - 20~23.5 → 23~23.5m 	
중로2류 68호선	중로2류 68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 폭원확장 - 확장구간 : 109m - 확장폭원 : 0.1m(18→18.1m) 	

2) 주차장 : 변경없음

3) 자동차정류장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외동 1264 일원	67,256	감) 110.9	67,145.1	95.11.22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2	자동차 정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면적 변경 -면적 : 67,256㎡ → 67,145.1㎡ 감) 1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 교통영향평가 변경내용을 수용하는 사항으로서, 터미널 주변 도로 폭원 확장에 따른 자동차정류장 면적 감소

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외동 1264 일원	규모	부지면적의 20%이상	-	부지면적의 20%이상	12.3.15	

다. 공간시설 :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 변경없음

바. 기타시설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변경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필지규모 변경)

구분	지 번	규모(㎡)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고도 및 최저고도	비고
기정	1264	67,256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주1)참조	주2)참조	주3)참조	
변경	1264	67,145.1	"	"	"	"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7. 내외지구 신시가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 변경없음

김해시 고시 제2017 - 122호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김해 도시계획(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김 해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김해시 대청동 308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장유 수변근린공원 수경시설(물놀이시설) 조성공사
-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도시계획시설결정 (㎡)	금회시행규모(㎡)	비 고
공 원 면 적	42,468.0	873.9	
시 설 면 적 계	7,505.6	873.9	유희시설
녹 지	21,586.6		
조성계획미수립	13,375.8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번지)
 - 주 소 : 김해시장(생활지원과장)
- 5.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4개월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대청동	308	공	7671.6	873.9	김해시	-	-	-	-	

- 7. 실시계획 사유
 - 공원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공원이용률이 저하되고 있어 도시거주 주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놀이장 설치.
-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5)비치】